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44호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현재 국시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‘아이돌봄서비스 사업’은 지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비용의 15~85%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개정안은 둘째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하여, 기존 자녀의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(본인부담금의 90~100%)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